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5월 22일, 주철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5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8.3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철현 의원)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선원법」에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안 제61조의2)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안 제91조, 제92조) 등을 두고 있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고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2조, 제159조의2),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08조), 타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성민)

가. 해사노동협약에 부합하는 선원 근로·보호 기준 정비

개정안은 현행법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선원관리 신고·수리 업무의 하위규정 위임근거 정비

개정안은 신고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 고시인 관리요령에 위임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제처의 지적사항을 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임원 선임방법 변경

개정안은 이사장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센터의 임원 임면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하게 되면 현행 선임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노·사 간 균형 및 기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조문 신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 재해보상 이행 여부 확인, 선내안전보건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출입항 신고 시 승선

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원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단체에 분산되어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 보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